

Eco-Quality 인증프로그램 절차

신청서 접수

- 인증 범위 협의 - 모델 구분 및 인증 품목 분류 협의 후 확정
 - 인증 수수료에 대한 사전 쌍방 합의

↓

신청서 검토

- 인증업무 진행과 관련한 쌍방 의견 조율

↓

심사계획수립

- 확정심사일 고지 전 최종 협의(일방 사정으로 평가계획 변경 가능)
 - 심사장소, 심사일정 및 기타 심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조사항 전달

1

현장심사

- 현장심사 : 심사원 2인 구성 원칙이나 심사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
증원 가능(인증책임자 및 관찰심사원 동행 가능)

※ 주1)인증책임자 및 관찰심사원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주2) 시스템형식 1b는 현장심사 생략

↓

제품평가

- 현장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
 - 인증신청서 접수 시 협의된 모델의 구분 및 품목분류 방식대로 실시
 - 심사원에 의한 샘플 채취, 샘플링 기록 및 입회자 등의

↓

보고서 검토(종합평가보고서)

- 현장심사보고서 및 제품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

↓

인증의 결정

- 이중기술워크숍을 소집하여 결정

※ 이 경우 각 위원의 이격격과에 따라 충가평가를 지행할 수 있음

↓

약정체결 및 인증서 교부

- 인증기술위원회에서 인증으로 결정 시 약정서에 쌍방 날인
 - 신청제품 중 제품평가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서 교부

↓

공고

-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업체로 등록

< EQ인증 절차 - 3, 5 >

